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27일, 문금주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금주 의원)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 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피해 추가

이상고온은 계절적 평균기온을 초과하는 고온 현상으로, 낮의 일

최고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폭염과 밤의 일최저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포함함.

이상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해충 발생,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처럼 이상고온은 폭염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지구온난화의 본격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감안하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농업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추가

□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디지털 관측(1999년) 이후 규모 4에 달하는 중규모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8회, 규모 3.0(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4회 발생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해일, 조수를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진과 화산활동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음.

○ 두 법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동일 재해기간 중의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이 이루어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 현행법 제4조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농업재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을 추가하여 지원의 확실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